

이진욱
2017 이진욱 세무사의
객관식 세법
2018년판 1쇄 및 2쇄 추록
(2017년 3월 2일 기준)



2017 이진욱 세무사의 객관식 세법 2018년판 1쇄 및 2쇄 - 추록

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2017년 3월 2일 기준)

2017년 1월 20일 발행된 2017 이진욱 세무사의 객관식 세법 2018판 1쇄 및 2017년 2월 6일 발행된 2017 이진욱 세무사의 객관식 세법 2018판 2쇄에서 추가된(보완) 내용과 내용상의 오타자 등을 정리한 추록(정오포함)을 게재합니다.

페이지	추가·수정 前	추가·수정 後	수정내용
p. 66 아래에서 1째줄 [표내용 중 법률효과]	법률효과 법률효과	법률효과	중복 삭제
p. 102 위에서 4째줄 [06번의 ②번 지문]	②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②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내용 추가
p. 102 아래에서 2째줄 [해설-참고 내용 중 ⑤의 ㉔]	㉔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NEW	㉔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NEW	내용 추가
p. 140 아래에서 5째줄 [세무조사 결과통지 ②의 ㉔]	㉔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NEW	㉔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NEW	내용 수정
p. 142 아래에서 6째줄 [청구배제의 ⑤]	⑤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NEW	⑤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NEW	내용 수정
p. 143 위에서 2째줄 [청구절차 ②의 ㉔]	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 포함 NEW)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내용 추가
p. 148 위에서 12째줄 [05번의 해설의 ㉔]	㉔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NEW	㉔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NEW	내용 수정
p. 149 아래에서 1째줄 [10번의 해설의 (5)]	(5)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NEW	(5)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NEW	내용 수정

페이지	추가·수정 前	추가·수정 後	수정내용
p. 151 위에서 18째줄 [14번의 해설의 박스내용 중 (5)]	(5)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u>세무조사인 경우</u> NEW	(5)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의한 <u>세무조사를 하는 경우</u> NEW	내용 수정
p. 156 아래에서 4째줄 [08번의 ③번 지문]	③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u>세무조사결과의 서면통지인 경우</u>	③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u>세무조사를 하는 경우</u>	내용 수정
p. 154 아래에서 7째줄 [02번의 ③번 지문]	③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u>세무조사인 경우</u> 에는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u>세무조사를 마친 경우</u> 에는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용 수정
p. 167 아래에서 7째줄 [08번의 ③번 지문] [2쇄 반영완료]	③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u>세무서장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u>	③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u>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u>	을→은
p. 171 아래에서 5째줄 [06번의 ③번 지문] [2쇄 반영완료]	③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u>3억원</u>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③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u>2억원</u>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3억원→ 2억원
p. 181 아래에서 10째줄 [15번의 해설] [2쇄 반영완료]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세무서장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재기중소기업인은 <u>18개월</u>) 이내로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세무서장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재기중소기업인은 <u>3년</u>) 이내로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18개월→ 3년
p. 242 아래에서 10째줄 [재화의 간주공급 ② 하단의 주석 내용 중 ㉠]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으로만 <u>전액</u> 을 결제 받고 공급하는 재화 NEW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으로만 <u>전부</u> 를 결제 받고 공급하는 재화 NEW	전액을→ 전부를
p. 264 아래에서 5째줄 [적용거래대상 ②의 주석]	* 단, 우체국택배, 고속철도(KTX),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및 스키장 등은 제외	* 단, 우체국택배, <u>우편주문판매 대행용역</u> NEW , 고속철도(KTX),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및 스키장 등은 제외	내용 추가
p. 266 아래에서 4째줄 [03번의 ④번 지문]	④ 수출업자에게 하도급을 받은 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수출업자에게 하도급을 받은 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 <u>가공용역</u> 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가공역→ 가공용역
p. 267 위에서 3째줄 [04번의 ④번 지문]	② <u>여객이나</u>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u>외국을</u>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여객이나→ 외국을

페이지	추가·수정 前	추가·수정 後	수정내용
p. 277 아래에서 4째줄 [07번의 ④번 지문]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 을 공급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 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무체물을 → 권리
p. 281 아래에서 12째줄 [거래유형별 과세표준 ④의 표] [2쇄 반영안료]	구 분 공급장소	구 분 과세표준	공급장소 → 과세표준
p. 306 아래에서 1째줄 [13번 해설]	부도발생일이 2016년 6월 30일이라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날은 2016년 12월 31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년 1월 1일이므로 2016년 1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이 2016년 6월 30일이라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날은 2016년 12월 31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년 1월 1일이므로 2017년 1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 2017년
p. 318 위에서 3째줄 [04번의 ②번 지문]	② 업무용차량으로 구입한 중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② 업무용차량으로 구입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내용 수정
p. 339 아래에서 2째줄 [참고의 (2) 본문]	사업양도시 사업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NEW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양도시 사업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NEW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내용 추가
p. 395 아래에서 22째줄 [사외유출의 3)의 ②]	②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단, 증빙누락으로 제외)	②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단, 증빙누락은 제외)	으로 → 은
p. 441 위에서 3째줄 [08번 문제 박스내용 중 ㉠]	㉠ 임원에게 지급하는 직장체력단련비, 직장 연예비 등	㉠ 임원에게 지급하는 직장체력단련비, 직장 문화비 등	직장연예비 → 직장문화비
p. 456 아래에서 17째줄 [14번 문제의 ③번 지문]	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 연예비 와 직장회식비는 접대비로 본다.	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 문화비 와 직장회식비는 접대비로 본다.	직장연예비 → 직장문화비
p. 456 아래에서 5째줄 [14번 문제 해설의 ③번 지문]	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 연예비 와 직장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 문화비 와 직장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직장연예비 → 직장문화비
p. 522 위에서 7째줄 [13번 문제 박스내용 중 3번째 항목]	•제10기 중 현금 회수액 14백만원(2016년 1월분 선수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제10기 중 현금 회수액 14백만원(2018년 1월분 선수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2016년 → 2018년
p. 533 아래에서 10째줄 [37번 문제의 ①번 지문]	① 2016년 11월의 외상판매분 ₩2,000,000 중에서 2017년 1월에 ₩30,000의 매출할인이 발생하였고, 회사는 이 금액을 2015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였다.	① 2016년 11월의 외상판매분 ₩2,000,000 중에서 2017년 1월에 ₩30,000의 매출할인이 발생하였고, 회사는 이 금액을 2016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였다.	2015년 → 2016년

페이지	추가·수정 前	추가·수정 後	수정내용																		
p. 534 위에서 2째줄 [37번 문제 해설]	법인세법은 매출할인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문의 사례에서는 2016년의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6기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익금산입, 7기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법인세법은 매출할인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문의 사례에서는 2017년의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6기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익금산입, 7기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2016년 → 2017년																		
p. 554 위에서 7째줄 [06번의 ③번 지문]	③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용 수정																		
p. 554 아래에서 10째줄 [07번의 ⑤번 지문]	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내용 삭제	내용 삭제																		
p. 563 아래에서 8째줄 [법인세 신고 (3)의 ④번 항목]	④ 이자상당액 가산 : 법인세액 × 연장일수 × 연 2.5%	④ 이자상당액 가산 : 법인세액 × 연장일수 × 연 1.6% ^{NEW}	2.5% → 1.6% ^{NEW}																		
p. 584 위에서 3~4째줄 [미환류소득 (2)의 본문]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법인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미환류소득(‘-인 경우는 초과환류액’)으로 함. 단,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법인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미환류소득(‘-인 경우는 초과환류액’)으로 함.	내용 삭제																		
p. 584 위에서 9째줄 [미환류소득 (2)의 ② 하단 주석 *1]	*1 투자액 :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운용리스자산은 제외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NEW})에 대한 투자합계액	*1 투자액 :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운용리스자산은 제외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NEW})에 대한 투자액과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액의 합계액	내용 추가																		
p. 671 아래에서 11째줄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⑩]	⑩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퇴직소득으로 과세됨)] ^{NEW}	⑩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기타소득으로 과세됨)] ^{NEW}	퇴직 → 기타																		
p. 672 아래에서 1째줄 [참고 표내용 중]	<table border="1">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퇴직소득 과세</td></tr> </table>	~	~	~	~	~	~	~	~	퇴직소득 과세	<table border="1">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기타소득 과세</td></tr> </table>	~	~	~	~	~	~	~	~	기타소득 과세	퇴직 → 기타
~	~	~																			
~	~	~																			
~	~	퇴직소득 과세																			
~	~	~																			
~	~	~																			
~	~	기타소득 과세																			
p. 679 아래에서 6~7째줄 [무조건 종합과세]	①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금품 ②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배상금	① 퇴직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 제외) ^{NEW} ②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금품 ③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배상금	내용 추가 및 수정																		

페이지	추가·수정 前	추가·수정 後	수정내용
p. 741 위에서 20째줄 [교육비 세액공제 ④의 ㉔]	㉔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내용 수정
p. 821 위에서 16째줄 [납부유예의 ③]	③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연 1.8%)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연 1.6% ^{NEW})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8% → 1.6% ^{NEW}
p. 859 아래에서 17째줄 [비상장주식의 ①]	㉔ 1주당 순자산가치 ^{※2} × 80% ^{NEW}	㉔ 1주당 순자산가치 ^{※2} × 70%(2018.4.1.이후 80%) ^{NEW}	내용 수정
p. 859 아래에서 13째줄 [비상장주식의 ②]	㉔ 1주당 순자산가치 ^{※2} × 80% ^{NEW}	㉔ 1주당 순자산가치 ^{※2} × 70%(2018.4.1.이후 80%) ^{NEW}	내용 수정
p. 859 아래에서 2째줄 [비상장주식의 ③의 ㉔]	㉔ 법인의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NEW}	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NEW} ㉔ 법인의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NEW}	내용 추가 및 수정
p. 878 위에서 6, 7째줄 [29번 문제의 ㉔번 지문]	②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2과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해당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②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2과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해당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70%를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70%를 곱한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80% → 70%